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63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 문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2. 8

판 결 선 고 2021.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서구 B 대 41㎡ 에 관하여 2017. 9. 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1997. 9. 19. C과의 이혼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대구고등법원 96르524호)이 확정되 어, 위 판결의 재산분할 내용에 따라 원고가 대구 서구 B 대 41㎡(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에 따라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인 1997 . 9. 20. 부터 20년이 경과되는 2017. 9. 20.자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 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 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판결 참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 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역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5493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에 관 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일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15. 위 법원으로부터 청 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대구지방법원 2020나301832호)와 상고(대법원 2020다236374호)가 모두 기각되어 2020. 8. 31.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 건 패소판결'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을 제기하여 이 사건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전소에서 확정된 위

패소판결의 기판력 은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패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형원